

5.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誘致促進法中 改正法律

법률 제5,377호 1997. 8. 28

주 요 골 자

- 가. 민자유치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2종시설에 국제의회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의회시설과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추가함(법 제2조제3호).
- 나.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시중은행·특수은행·신탁회사 등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보험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추가하여 민자사업시행자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함(법 제2조제5호)
- 다. 민자유치대상사업을 민간부문에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유치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(법 제5조의 2)
- 라.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전담법인제도를 도입함(법 제12조의 2).
- 마. 민자유치 제1종시설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(법 제50조의 2).

개정이유

민자유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,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근거를 신설하며, 민자유치사업을 민간부문에서도 제안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 일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”를 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”로 하고, 동조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호더목중 “도서관전홍법”을 “도서관및독서전홍법”으로 하고, 동호에 머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

며.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

제2조제11호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호에 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모. 도서관 및 독서전홍법

조.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

제2조제15호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

차.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

제1장에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제 5조2(민간부문의 사업제안) 민간부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자유치기본계획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중 “경제기획원장관, 재부부장관”을 “재정경제원장관”으로, “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”을 “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

민간위원”으로, “경제기획원장관”을 “재정경제원장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민간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.

제12조제4항 단서중 “6월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12 조의 2(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)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 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시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법인(이하 “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야 한다.

④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에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·관광단지 개발사업

10.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 개발사업

제2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제8호중 “면허”를 “등록”으로 하며,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,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,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보는 인·허가등

10.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,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

·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·
허가 등

제41조제1항에 제4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4.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제12조의

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제4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42 조의 2(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) 주무관청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자유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46조중 “외자도입법”을 “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중 “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을 “농지법”으로 “대체농지조성비”를 “농지조달비”로 한다.

제5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50 조의 2(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)

①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

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시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(이하 “사회간접자본채권”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제1종시설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 본문중 “경제기획원”을 “재정경제원”으로 하고, 동조제7호 중 “경제기획원장관”을 “재정경제원장관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3항·제4항, 제40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 중 “재무부장관”을 각각 “재정경제원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